

(參照)

1993年度 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

1993년 12월 23일

운영위원회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 의회사무국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사무국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하여 의회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치입법활동에 반영함과 동시에 심도있는 1994년도 예산심의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얻고자 함.

2. 감사기간

1993. 11. 30. (화) [1일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

마포구의회사무국

4. 감사실시 경과

가. 감사위원회 편성 및 감사장소

구분	감사위원	대상기관	감사장소	사무직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종만 (간사) 권오범 (위원) 구우석, 김종열, 손용호, 이강필, 이봉형, 정연우, 조희태, 채운석	의회사무국	운영위원회실	박진양

나. 감사일정

일시	감사내용	비고
'93. 11. 30. (화) 09:00-10:00	• 업무현황 보고 청취 • 질문, 답변 • 감사결과 강평 및 종료	

다. 감사방법

- 감사실시 대상기관에 대해 업무현황보고 청취, 주요업무 추진내용에 대한 질문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였음.

5. 주요감사 실시내용

- '93년도 각종 주요업무의 계획과 추진실적
- '93년도 예산의 집행 사항
-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6. 감사결과

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 1) 의정홍보비의 다양한 활용으로 의원 의정활동 활성화 강구 요망

나. 건의사항 : 없음.

7. 처리의견

-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중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이 시정 또는 처리하고, 건의사항은 금후의 정책입안, 수립, 시행과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건의함.

8. 기타 특기사항

- 이번 제20회 정기회를 앞두고 본회의장에 각 의원 책상에 [마이크]시설을 설치한 것은 매우 잘한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도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람.

1993年度 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

1993년 12월 23일

총무재무위원회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청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생활과 직결된 구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하여 구민편의를 증진하고 구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자치입법 활동에 반영함과 동시에 심도있는 1994년도 예산심의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얻고자 함.

2. 감사기간

1993. 11. 30. (화) — 1993. 12. 2. (목) [3일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

- 마포구청(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총무국, 재무국)
- 동사무소(공덕1동, 서교동)

4. 감사실시 경과

가. 감사위원회 편성 및 감사장소

구 분	감사위원	대상기관	감사장소	사무직원
총무재무 위원회	(위원장) 심재창 (간 사) 윤동현 (위 원) 김성환, 김유현 박주서, 유남렬 윤정용, 이강필 조희태	총 무 국 재 무 국 시민봉사실 감 사 실 문화공보실 동사무소	총무재무 위원회실 및 해당 동사무소	박진양

나. 감사일정

일 시	감사실시대상기관	비 고
'93. 11. 30. (화) 10:00-1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총무국 업무현황 보고 청취</li> <li>감사실</li> <li>문화공보실</li> <li>시민봉사실</li> <li>총무국</li> </ul>	
'93. 12. 1. (수) 10:00-1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총무국</li> <li>재무국 업무현황 보고 청취</li> <li>재무국</li> </ul>	
'93. 12. 2. (목) 10:00-1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덕1동사무소</li> <li>서교동사무소</li> <li>감사결과 강평</li> <li>감사 종료</li> </ul>	

다. 감사방법

- 감사대상기관에 대해 업무현황보고 청취, 제출서류요구, 주요업무 추진내용에 대한 질문, 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였음.

5. 주요감사 실시내용

가. 주요 감사실시 내용

감사대상기관	주요 감사 내용	비 고
문화공보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93. 서울신문 구독현황 및 각 동별 지출명세 현황</li> <li>문화재관리 현황 및 보수 내역</li> <li>'93년도 각종 문화행사 지원내역(각 동별)</li> <li>각종 구정 홍보지 배부 현황</li> <li>출판사, 인쇄소, 음반판매업소 지도감독 현황</li> <li>홍보책자 발간 및 구독 서적현황</li> </ul>	

감 사 실

- '93. 각종감사(자체감사포함)의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비위 공무원 처리 내역
- 상급기관 하명 사건처리 현황
- 구청장이 명한 조사 사항 내용 및 처리현황
- 환경 순찰 현황
- 감사실 직원 현황

시민봉사실

- 민원인의 전화 민원 건수와 찾지 않는 건수 및 92년 대비

총 무 과

- 진정서 접수처리 현황
- '93년도 관변단체지원금 현황
- 구민회관 건립 추진 계획안
- 구청 및 동별 자매결연 현황 및 실적
- '93년도 칙사대회 참여인원 현황
- '93년도 공무원 사기양양 대책 및 실적
- 구청 주관 '93년도 행사현황
- 각종 위원회 현황
- 동행정 실적 심사결과 현황
- 시민포상 심사기준과 대상
- 차량 관리 현황
- 기부금품 및 잡부금품 모집 현황
- 반상회 운영 및 지도감독 현황
- 시민표창 현황
- 구청장 참석 간담회 및 주민면담 실적현황 및 효과

기획예산과

- 행정심판 및 소송현황 및 승·패소 원인분석 내역과 소요된 비용내역, 국고손실이 있었다면 그 내역
- 중요계획 수립에 관한 조정통계 현황
- 구 시책과 계획수행의 심사분석 및 평가현황
- 주요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심사분석 비교자료 현황

국민운동  
지원과

- 새마을 이동문고 문고구입 목록과 구입비 명세현황
- 각 유관단체 지원예산 지출내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바르게 살기 협의회 지원현황</li> <li>•바르게 살기운동 계획수립 및 추진현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92년 이후 체납세 부과건수 현황</li> </ul>
생활체육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활체육시설 위탁 경영</li> <li>•'93. 동민체육대회 참여인원 현황</li> <li>•'93. 체육행사 지원 내역</li> <li>•사회체육진흥 지원 및 협조 현황</li> <li>•체육시설업의 신고, 등록현황 및 관리지도 현황</li> <li>•여가생활 관련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li> <li>•체육공원 관련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li> <li>•공공체육시설 관련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li> </ul>	토지관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 징수, 체납현황과 이의신청, 행정심판, 소송내용 및 처리결과</li> <li>•택지취득 허가신고 처리 현황</li> <li>•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li> <li>•토지거래 허가신고 현황</li> <li>•지가정보와 관련기관 제공 및 주민의견 수렴 현황</li> </ul>
민방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방위훈련 대상자 현황</li> <li>•민방위시설 계획, 집행, 추진사항, 관리현황</li> <li>•장비 및 물자 수급관리 현황</li> <li>•민방위대의 동원현황 및 불참자 처리현황</li> </ul>	동사무소 (공덕1동, 신공덕동, 서교동, 상암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93년 보안동 유지관리 현황 (신고처리대장 사본)</li> <li>•'93년 생활보호대상자(거택, 자활, 의료부조자) 현황</li> <li>•'93년 청소차량, 환경미화원 관리현황</li> <li>•'93년 민방위대 운영현황(편성, 훈련, 불참자 조치)</li> <li>•'93년 소규모 사업시행 내역</li> <li>•'93년 청사 유지관리비 사용 현황</li> <li>•'93년 도급 경비 사용 현황</li> </ul>
재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 공유 재산관리 현황</li> <li>•국, 공유 재산관리 및 처분현황</li> <li>•공사도급중 설계변경을 실행한 공사현황</li> <li>•체비지 대부료 부과현황</li> </ul>	나.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세무1, 2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0만원 이상의 체납자명단 및 압류된 내용 현황</li> <li>•세외수입 세목별 부과금 과징 수실적</li> <li>•지방세 체납액중 '93년도 결산 처분 현황(세목별)</li> <li>•시세의 징수 및 체납 처분에 관한 민원처리와 징수 유예현황</li> <li>•법인의 실시계획 및 집행현황</li> <li>•법인에 대한 부과처분의 취소 변경 및 감면현황</li> <li>•'92, '93년 준공된 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세 및 '93년 준공건물에 대한 등록세 개인별 부과내역</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문제가 야기되고 난 후에 사후약방문식의 감사를 하고 있는데, 사전에 예방감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li> <li>2) 지역교통과와 동사무소에서 관리중인 행정차량의 관리가 미흡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바, 철저한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li> <li>3) 청소차량이 김포매립지에 반입물 불량차량으로 [체크]되어 운행정지처분을 받아 운행하지 못하는 등,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으니 철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li> <li>4) 불법비디오 판매업에 대한 단속이 미흡한 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단속에 만전을 기할 것.</li> <li>5) 우리 구에 소재하는 각종 문화재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바, 이에 대한</li> </ol>	

- 철저한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문화재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 6) 전화민원 신청후 안 찾아가는 민원인이 많아 예산 및 인력낭비를 초래하는 바, 이에 대한 홍보방안등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
  - 7)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복지가 미흡한 바, 실질적인 복지대책을 마련하여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앙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8) 도·농간 자매결연이 1개동에 3~4개 지역과 결연이 되어 있는 바 1개동에 1개 지역 농촌과의 자매결연이 본 취지에 바람직한 정책으로 사료되는 바 대책을 강구할 것.
  - 9) 종합체육시설 이용료 심의위원회에서 "스포츠시티" 체육시설에 대한 이용료 책정시 규모가 작은 "대호 헬스랜드"와 비교하여 책정된 이용료의 타당성 확인할 것.
  - 10) 체육시설 "스포츠시티"의 이용자중 특별회원문제, 연회비를 납부하고도 골프장캐비닛 사용료, 목욕탕사물함 사용료징수의 타당성, 종합체육시설 승인 및 변경승인과정에서의 처리문제, 음료수예 대한 점검여부등을 조사후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
  - 11)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이 부족한 바 유희토지 등을 확보하여 활성화 대책을 강구할 것.
  - 12) 관내 체육시설물에 대한 수리, 도색등이 너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는 1년에 1번 하더라도 완벽한 작업이 되도록 시행할 것.
  - 13) 민방위교육, 훈련통지서 교부시 통지서상에 적색글씨로 "고발" 도장을 찍어서 교부하는데 공포감을 조성하는 등 문민정부시대에 맞지 않는 바 다른 방법을 강구할 것.
  - 14) 비상공동정호를 철저히 관리하여 정말로 비상급수가 필요할 때 모든 주민이 신속히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15) 새마을이동문고 이용이 미흡한 바 홍

- 보를 철저히 하여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16) 지방세 체납이 갈수록 늘어나는데 이에 대한 징수대책을 철저히 세워 시행할 것.
  - 17) 세외수입중 도로하천부지 사용료 징수율이 해마다 실적차이가 많이 나는데 직원교육을 철저히 하여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 18) 다가구주택의 취득세 부과시 일반인이 생각할 때 똑같은 주택인데도 세액차이가 많아서 주민들의 오해가 있는데 이에 대한 홍보대책을 강구할 것.
  - 19)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경로승차권 지급시 본인이나 가족에게 지급되어야 하는데 이웃, 집주인등 제3자에게 지급하는 사례가 있는 바 시정조치할 것.

#### 다. 건의사항

- 1) 망원정앞 양화진 나루터의 위치가 불분명한 바, 정확한 고증후 표지판 설치를 하여 주기 바람.
- 2) 문화행사지원비가 행사별, 연도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 등 일관성이 없으니 향후 지원할 때에는 행사의 중요도, 참여인원등 제반사항을 정확히 판단하여 형평있는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바람.
- 3) 반상회보 발간등 언론매체를 통한 구의원들의 활동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홍보방안을 수립하여 구의회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
- 4) 새마을이동문고에 구청 민원서식을 비치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바람.
- 5) 구민회관 건립이 지연되는 바, 구민회관 건립계획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바람.
- 6) 창전동 와우산 구민회관 건립후 주변의 교통체증이 예상되는 바,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구민회관 건립계획과 병행하여 추진하기 바람.
- 7) 동 또는 주민행사시 지원금을 충분히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행사자체를 없애는 방법이 나올 것 같으므로 기획차원에서 연구 검토바람.

8) 민방위편성기피, 교육 및 훈련불참자등에 대한 행정고발을 지양하고 과태료 처분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 건의바람.

9) 소득할주민세에 대한 체납 건수 및 세액이 타 세금보다 많은데 이에 대한 징수실적대책 및 국세와 같이 원천징수방안을 강구하여 건의바람.

10) 순찰기능을 강화하고 세외수입을 증대키 위하여 "순찰계"를 보강하고 "세외수입계"를 신설하는 직제 개편 검토바람.

6. 처리의견

-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중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 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가 시정 또는 처리하고 그 결과를 1994. 1. 31.까지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며, 건의사항은 금후의 정책입안, 수립, 시행과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건의함.

7. 기타 특기사항(수법 사례)

- '93년 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 24개 동사무소 중 2개 동사무소(공덕1동, 서교동)를 선정, 감사를 실시한 바, 공덕1동사무소의 경우 회의실을 개방하여 관내 불우한 주민들에게 예식장, 회의장소 등으로 개방한 것은 행정기관과 주민화합 차원에서도 좋은 사례로 평가되는 바 앞으로 동청사 신속시는 위 사례를 참고하여 신속하기 바람.

1993年度 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

1993년 12월 23일  
시민보건위원회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청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생활과 직결된 구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하여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구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치입법 활동에 참고함과 동시에 1994년도 예산심의 를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

2. 감사기간

1993. 11. 30. (화) — 1993. 12. 2. (목) [3일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

- 마포구청(시민국, 보건소), 동사무소(성산제2동, 공덕제2동)

4. 감사실시, 경과

가. 감사위원회 편성 및 감사장소

구 분	감사위원	대상기관	감사장소	사무직원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 구우석 (간사) 홍성환 (위원) 김상열, 송윤석 이봉형, 이종일 정연우, 홍길표 황태식	시 민 국 보 건 소 동사무소	시민보건위원회실 동사무소	조황현

나. 감사일정

일 시	감 사 대 상	감사방법
'93. 11. 30. (화)	•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산업과, 환경과, 청소과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서류제출 요구
'93. 12. 1. (수)	• 성산제2동사무소 • 공덕제2동사무소	"
'93. 12. 2. (목)	• 보건소 • 시민국	"

5. 주요감사 실시내용

가. 주요 감사실시 내용

감사대상기관	주 요 감 사 내 용	비 고
사회복지과	• 취로사업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여부 • 이웃돕기기금 모금방법 적정여부 • 생활보호대상자 장제비 지급현황 • 지역의료보험조합 지도 감독현황	

가정복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할아버지 봉사활동비 10% 예산절감의 타당성 여부</li> <li>• 노인공동작업장 증설 및 효율성 여부</li> <li>• 여성교양교육의 필요성 여부</li> <li>• 요보호 여성 선도 및 직업보도 실적</li> <li>• 경로승차권 배부 및 관리 현황</li> <li>• 경로행사, 시민알뜰장 운영의 필요성 여부</li> <li>• 노인건강진단 홍보</li> <li>• 음식점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형 간염백신을 현재가격보다 비싸게 구입했는지 여부</li> <li>• 음용수, 약수터 등 수질을 수시로 검사하는지 여부</li> </ul>
위생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생과 민원실에서 담당부제시 업무처리가 안되는 이유</li> <li>• 무허가위생업소 구제 방안</li> <li>• 용강동 스포츠타시 사우나 협정요금 위반 등에 관한 사항</li> <li>• 보건증미소지자 고용업소 처벌에 관한 사항</li> <li>• 식품위생업소 자율점검에 관한 사항</li> <li>• 변태이발소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li> </ul>	<p>동사무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긴급구호 선정 방법 및 기준</li> <li>• 형식적인 재활용추진협의회 운영</li> <li>• 이웃돕기 모금방법 및 동할당액, 수혜자 선정 방법</li> <li>• 경로승차권 지급방법 및 배부의 정확성 여부</li> <li>• 알뜰시장 본래목적에 대한 운영성과 존치의 필요성</li> <li>• 취로사업대장 정리 상태</li> </ul>
산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 유통질서 문란에 대한 대책</li> <li>• 도·농간 자매결연의 효율성 여부 및 상설매장 설치 추진 여부</li> <li>• 도시가스 공급 일시 중단에 따른 대책</li> </ul>	<p>6. 검사결과 처리의견</p> <p>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p> <p>1) 시민국 소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웃돕기성금등 주민부담 잡부금 모금에 있어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자율적인 성금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li> <li>• 취로대장 정리에 있어 관리감독이 미흡한 바, 관리감독 대책수립 및 철저한 직원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li> <li>• 경로승차권 지급대상등 공부정리가 미흡한 바, 직원교육을 철저히 하여 공부정리에 만전을 기할 것.</li> <li>• 음식점에서 드레스 대여비용이 최고 90만원인데 드레스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 음식점 사용이 불가능한 바,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단속에 철저를 기할 것.</li> <li>• 용강동 스포츠타시에서 목욕료를 협정요금 이상으로 받고 구조를 변경하여 이발소를 설치하고 신발장이용료를 징수하며 수도물을 생수통에 넣어 제공하는 등 횡포가 심하므로 정확히 조사하여 시정토록 하고 감독을 철저히 할 것.</li> <li>• 위생과 민원실에서 담당부제시 업무처리가 안되고 있으니 직원교육을 실시하여 대민봉사에 만전을 기할 것.</li> </ul>
환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공평성 여부</li> <li>• 세차장업주 교육 및 수질 점검 현황</li> </ul>	
청소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쓰레기 수거상태 및 환경미화원 관리</li> <li>• 난지도에 대규모 쓰레기소각장 건설의 필요성 여부</li> <li>• 쓰레기 분리수거 현황</li> <li>• 정화조 설치기준 부적정 건물 점검 현황</li> </ul>	
보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소 간호사등 전문직 인원 보충이 안되는 이유</li> </ul>	

- 변태이발소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고 사료되는 바,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동일 회사의 동일 제품가격이 상점마다 상이하는 등 시장유통질서가 문란하다고 사료되는 바, 대책을 수립하여 질서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
- 기사식당 주변 노상세차행위가 수질을 오염시키는 바,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단속에 철저를 기할 것.
- 쓰레기분리수거를 1, 2개 동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완전정착시 인근동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 쓰레기분리수거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동사무소 재활용추진협의회 회의를 비용지출때에만 개최하는 등 형식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바, 개선책을 마련할 것.

나. 건의사항

1) 시민국 소관

- 취로사업대상인원을 늘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 바람.
- 노인들이 보람있는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노인정에 일거리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 바람.
-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건립시 가정복지과에서는 공사진척 상황만 확인하고 외관상 이상이 있을시 건축과에 시정의외부에 할 수 없어서 목적외 공사가 우려되므로 직접 감독할 수 있도록 건의 바람.
- 도·농간 자매결연으로 농산물 팔아주기틀 하고 있으나 형식에 그칠 염려가 있다고 사료되는 바, 구내 상설매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 바람.

2) 보건소 소관

- 구민건강을 위하여 정원에 훨씬 못미치는 간호직 등 전문직 인원을 보충해 주도록 마포구 및 서울시에 건의 바람.

다. 처리의견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중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

의 규정에 따라 마포구청장이 시정처리하고 그 결과를 1994. 1. 31.까지 마포구의회에 보고토록 할 것이며, 건의사항은 정책수립·시행에 적극 반영하기 바람.

1993年度 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

1993년 12월 23日  
도시건설위원회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청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생활과 직결된 구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하여 구민편익을 증진하고, 구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치입법활동에 활용하고, 1994년도 예산심의를 심도있게 하기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

2. 감사기간

1993. 11. 30. (화) - 1993. 12. 2. (목) [3일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

- 마포구청(도시정비국, 건설국)
- 동사무소

4. 감사실시 경과

가. 감사반의 편성

구 분	감사위원	대상기관	감사장소	사무직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한현덕 (간 사) 전병만 (위 원) 권오범, 김동휘, 김문태, 김종열, 손용호, 윤명규, 이인규, 이종만, 이천규, 채운석	도시정비국 건설국 동사무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신승관

나.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감사대상부서	감사장소	감사방법	비고
'93. 11. 30. (화)	주 택 과 도시정비과 지역교통과	도시건설 위원회실	현황보고 청취자료 요구 정책질의	
'93. 12. 1. (수)	건 축 과 지 적 과 건설관리과 토 목 과 하 수 과	도시건설 위원회실	〃	
'93. 12. 2. (목)	공원녹지과	도시건설 위원회실	〃	

5. 주요감사 실시내용

가. 주요 감사실시 내용

1) 도시정비국 소관(주택과, 도시정비과, 지역교통과, 건축과, 지적과)

감사대상기관	주요 감사 실시 내용	비 고
주 택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허가건물 발생 방지 및 처리 대책</li> <li>• 재개발 추진현황과 향후대책</li> <li>•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과 향후대책</li> </ul>	
도시정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허가간판 단속대책</li> <li>• 도시계획 용도지역 조정방안</li> <li>•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대책</li> <li>• 토지 형질변경 허가현황 및 무단 형질변경 단속대책</li> </ul>	
지역교통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컴퓨터를 비롯한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납부동 공부관리상 태</li> <li>• 불법주차에 대한 문제점 및 해소방안</li> <li>•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현황 및 체납일소 대책</li> <li>• 주차장특별회계중 각종 소규모 주차장 설치방안</li> <li>• 교통대책위원회 활성화 방안</li> </ul>	
건 축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사 및 감리사의 지도감독 및 향후 지도감독 대책</li> <li>• 주차장 무단용도변경 사용 단속 대책</li> </ul>	

- 위법 건축사 및 감리사의 부정 행위 근절 방안
- 위법건축물이 양산되고 있는데 대한 문제점과 향후대책

지 적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원인에 대한 친절봉사 향상 대책</li> <li>• 민원시간 단축을 위한 민원전 화 증설방안</li> </ul>
-------	--

2) 건설국 소관(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감사대상기관	주요 감사 실시 내용	비 고
건설관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동별 이면도로 노상적치물 (불법가설물) 단속현황 및 향후 단속대책</li> <li>• 포장마차 단속현황 및 제발방 지대책</li> <li>• 도로점용료 체납현황 및 체납 일소 방안</li> </ul>	
토 목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암동길(25M도로) 신설공사가 지체되는 사유와 향후 추진 대책</li> <li>• 도로포장공사 현황과 우선순위에 대한 적정성 여부</li> <li>• 도로굴착후 복구가 지연되는 문제점 및 향후 개선대책</li> <li>• 보도블록 교체가 부실공사가 많은데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li> <li>• 용강동 신축청사 진입로 확장 정비 방안</li> <li>• 각종 보안등수리 대행업체 관리현황 및 향후 관리대책</li> <li>• 토목공사 시행중 설계변경이 많은 이유 및 개선방안</li> </ul>	
하 수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중호우시 취약지역에 대한 문제점 및 향후 대책</li> <li>• 수방자제 관리의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li> </ul>	
공원녹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 공원관리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대책</li> <li>• 야간공원관리의 문제점 및 관리방안</li> <li>• 공원편의시설 확충방안</li> </ul>	



- 이면도로 가로수전지등 가로수 관리의 문제점 및 향후대책
- 관내 약수터 관리실태 및 향후 개선대책

6. 검사결과 처리의견

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도시정비국 소관(주택과, 도시정비과, 지역교통과, 건축과, 지적과)

가) 주택과 소관

- 무허가건물에 대한 단속이 미흡한 바, 무허가건물 발생 방지를 위한 철저한 단속대책을 수립할 것.

나) 도시정비과 소관

- 무허가간판이 양산되고 또한 단속이 미흡한 바, 무허가간판 일소를 위한 단속대책을 수립할 것.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정비방안을 수립할 것.

다) 지역교통과 소관

- 컴퓨터를 비롯한 추정차위반 과태료 수납부등 공부정리가 미흡한 바, 직원교육을 철저히 하여 공부정리에 만전을 기할 것.
- 이면도로 불법주차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단속에 만전을 기할 것.
- 주차장특별회계중 각동 소규모 주차장설치 실적이 전무한 바,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을 수립할 것.

라) 건축과 소관

- 건축행정의 질서확립과 효율적인 건축행정을 위한 건축사 지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건축사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
- 감리사의 부정행위가 건축행정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대민봉사에 만전을 기할 것.
- 주차장 무단용도변경 사용에 대한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단속에 만전을 기할 것.

마) 지적과 소관

- 민원부서로서 민원인에 대한 민원창구 직원의 친절도가 미흡한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대민봉사에 만전을 기할 것.

2) 건설국 소관(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가) 건설관리과 소관

- 포장마차 단속에 있어 재발생등 단속이 미흡한 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단속에 만전을 기할 것.

나) 토목과 소관

- 도로굴착후 복구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은 바, 향후 개선대책을 수립할 것.

다) 하수과 소관

- 집중호우시 아직도 취약지역이 많은 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하절기 수방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
- 동사무소에 보관하고 있는 양수기 등 수방자재 관리가 부실한 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수방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

라) 공원녹지과 소관

- 이면도로 가로수 전지가 미흡한 바,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가로수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 공원 편의시설의 부족 및 공원에 식재한 수목이 고사하는 등 공원관리가 부실한 바, 철저한 공원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나. 건의사항

- 1) 마포구에는 도시계획 용도지역 중 상업지역이 부족하여 구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니 상업지역을 확대, 구전체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 바람.
- 2) 전화민원 폭주로 주민들이 전화민원 신청에 어려움이 많으니 민원전화를 증설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바람.
- 3) 상암로(25M 도로) 신설공사가 지체되어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바, 조속히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4) 도로포장등 토목공사시 우선순위 선정

에 있어 민원이 계속 야기되는 바, 우선순위 선정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다. 처리의견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중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가 시정 또는 처리하고 그 결과를 '94. 1. 31.까지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며, 건의사항은 금후의 정책입안, 수립, 시행과정에 적극 반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7. 기타 특기사항

- 수범사례  
지적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확한 집주소 찾아주기"는 우리구만이 실시하고 있는 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바, 관계직원 표창상신등 직원 격려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993년 11월 26일  
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3. 11. 18. 鄭然宇 議員의 6人
- 나. 회부일자 : '93. 11. 26.
- 다. 상정일자 : 제20회 정기회 제2차위원회('93. 11. 26)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鄭然宇 議員)

가. 제안이유  
구의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활동할 경우 비회기중에는 일비 및 여비가 지급되지 않는 바 보다 더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결산검사활동을 도모하고자,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본조례를 개정코자 함.

나. 주요골자

- 지금까지는 의원이 아닌 결산검사위원에게만 일비를 지급토록 하던 것을 앞으

로는 의원인 결산검사위원에게도 마포구의회 의원의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일비 및 여비를 지급토록 하려는 것임. (안 제7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朴寬受)
  - 동 조례안은 의원인 결산검사위원에게도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결산검사는 의회와 집행기관의 중립적인 입장에서 전문적이며 공정한 회계검사를 수행하는 한시적 기관으로의 성격이 있다고 사료되는 바 비회기중에는 결산검사활동에 있어서 시간적, 경제적 손실에 대한 실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李奉衡 委員) : 非議員인 결산검사위원은 얼마씩 지급되었나?
  - 답변요지(專門委員 朴寬受) : 우리 구의회는 비의원인 결산검사위원은 없었음.
- 5. 토론요지 : 없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8. 기타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40	제출년월일 : 1993년 11월 발의자 : 鄭然宇議員의 6인
----------	-----	--------------------------------------

- 1. 개정이유  
의원인 결산검사위원에게도 실비를 변상함으로써 원만하고 성실한 검사활동을 도모하기 위함.
- 2. 주요골자  
지금까지는 의원이 아닌 결산검사위원에게만 일비를 지급토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의원인 결산검사위원에게도 마포구의회 의원의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일비 및 여비를 지급토록 하려는 것임. (안 제7조)